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548

발의연월일: 2022. 11. 30.

발 의 자:이학영·강훈식·김홍걸

송갑석 • 신정훈 • 우원식

이동주 • 이성만 • 이장섭

임호선 · 홍익표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상담, 일시보호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급교체와 같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피해학생의 긴급보호가 필요한 상황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긴급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 거나 소홀히 한 경우 교육감이 징계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학생 의 긴급보호를 위하여 학급교체, 전문의료기관 등의 연계를 할 수 있 도록 하여 실질적인 피해학생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 항 및 안 제16조제1항 단서 등).

법률 제 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1.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
- 2. 해당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제2호 및 제6호"를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전문의료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련 기관으로의 연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 ⑨ |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 ⑨ (생 략) (현행과 같음) ⑩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 ⑩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 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 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다음 각 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 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 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1.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하여야 한다.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 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 도한 경우 2. 해당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 유 없이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①·①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 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 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 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 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 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 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 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 여야 한다.

1. ~ 5. (생 략) <신 설>

<u>6.</u> (생 략)

② ~ ⑧ (생 략)

<u>利1</u>
호, 제2호, 제4호, 제6호 및 제7
<u>\$\overline{\Sigma}\$</u>
1. ~ 5. (현행과 같음)
6. 전문의료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련 기관으로의 연계
<u>7.</u>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